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정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19958호, 2024 1. 9.공포, 7. 10.시행)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20223호, 2024 2. 6.공포, 8. 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기준과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조항(법 제5조) 삭제에 따른 위임조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8조 삭제 및 제4조(중전의 제10조) 정비)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법률 규정(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안 제4조(중전의 제10조)제3항 삭제)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방

식 및 집합교육 대상 규정(안 제16조(중전의 제22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재지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적용 및 세

부기준은 고시로 위임(안 제10조(중전의 제16조)제2항)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위반행

위에 따른 처분기준 개정(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협의 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기준”을 “지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 적용기준”으로 한다.

1. 생산시설 지정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한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3. 최근 3년 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인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 3을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 3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이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3년 연속 미달하는 경우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삭 제></u>
<u>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u> <u>위원의 임기</u>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u><삭 제></u>
<u>제4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지명한 자는 당연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u>	<u><삭 제></u>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5조제3항제2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
囑)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

<삭 제>

<삭 제>

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

<삭 제>

<삭 제>

제3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4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 ~ 제15조 (생략)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③ -----

----- 장애
인정책조정위원회-----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 ~ 제9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0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되,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지정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기 위한 심사 결과가

<u><신 설></u>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u>지정기준</u>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제17조 ~ 제19조</u> (생 략) <u>제20조 · 제21조</u> (생 략) <u>제22조</u>(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법 제14조</u>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적합한 경우</u> 3. <u>최근 3년 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u> 4. <u>장애인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u> ③ ----- <u>지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 적용기준</u>----- -----. <u>제11조 ~ 제13조</u>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u>제14조 · 제15조</u>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u>제16조</u>(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① ----- <u>법 제14조제1항</u>----- ----- ----- -----. ② <u>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u>
---	---

② (생략) 제23조 ~ 제25조 (생략)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 1. <u>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이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3년 연속 미달하는 경우</u> 2. <u>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u>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	--

별지

[별표 1] <신설 2018. 12.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지정 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법 제10조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1호				
1) 신청자의 적격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지정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취소 영업정지	지정	
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3개월 영업정지	취소 영업정지	지정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그 밖의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명령	3개월 영업정지	취소 영업정지	지정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3개월	6개월	취소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지정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취소 지정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	1개월 지정	3개월	취소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	법 제10조	영업정지	지정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6 호	1개월	취소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연 락 처	(044) 202 - 3330